

1. 개정이유

개정 국민체육진흥법률(법률 제17580호, '21.6.9. 시행)에서 위임한 사항과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선수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시 준수 사항을 규정(안 제3조의3 신설)

나. 직장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시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 규정(안 제3조의4 신설)

다. 학교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기간, 방법, 절차 등 규정(안 제23조의2 신설)

라. 학교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가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의 행정처분(안 별표 4)

마. 징계정보시스템 정보게재기관이 “경기단체”에서 “체육회등*”으로 확대됨에 따른 규정 정비(안 제30조의5 개정)

*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, 운동경기부
아.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30조의8 신설)

사. 그밖에 “통합체육회”가 “대한체육회”로 변경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(안 제26조의3 등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의견조회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사전검토 전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제3조의2로 한다.

제3조의3, 제3조의4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합숙소의 관리 등)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받을 것
2. 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
3. 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.5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
4. 합숙소에 입소하는 선수가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및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 - 가. 해당 선수의 침실
 - 나. 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, 식기,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
 - 다. 합숙소 내 선수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
5.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

가. 합숙소의 침실,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

나. 선수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

제3조의4(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)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“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사전 공지에 관한 사항
2.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체의 장과 선수·지도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선수단 구성 현황 및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적합 여부
2. 합숙소 운영·관리 실적
3. 선수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등 조치실적
4. 직장운동경기부 훈련계획 수립 및 사전 공지 이행 실적
5.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체의 장과 선수·지도자간 협의 실적

제22조의2(체육지도자의 재교육)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(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

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
1.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

2. 경기단체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, 스포츠 윤리의식 향상 교육,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인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·단체(이하 이조에서는 ‘재교육기관’이라한다)에 위탁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연도에 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11 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, 질병,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

우

2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⑥ 재교육기관의 장은 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12 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⑦ 재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재교육 계획서를,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재교육 실적보고서 및 재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그 밖에 재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6조의3제1항제1호 중 “통합체육회”를 “대한체육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합체육회장”을 “대한체육회장”으로 한다.

제30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지방자치법」 제93조에 따른 시장·군수·구청장

제30조의4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

제30조의5제3항 중 “체육단체”를 “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(이하 이 조에서 “체육회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경기단체”를 “체육회 등”으로 한다.

제3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8(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
법 제18조의17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
그 자료의 범위, 보유·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
해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필
요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
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
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

별표 4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“법
제12조제1항제7호”를 “법 제12조제1항제8호”로 하며, 같은 호에 사목을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12조제1항 제7호	서면경고	자격정지 6개월	자격정지 1년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

별지 제5호의11서식 및 별지 제5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
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

제 호

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

1. 성 명:
2. 생 년 월 일:
3. 소 속:
4. 자 격 번 호:
5. 교 육 기 간: 년 월 일 ~ 월 일()시간

위 사람은 년도 체육지도자 재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
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제6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
여합니다.

년 월 일

재교육기관의 장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2조의2</u>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제3조의2</u> (현행 제2조의2와 같음) <u>제3조의3(합숙소의 관리 등) 법</u> <u>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u> <u>1. 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받을 것</u> <u>2. 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</u> <u>3. 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.5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</u> <u>4. 합숙소에 입소하는 선수가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및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</u> <u>가. 해당 선수의 침실</u> <u>나. 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,</u>

<신 설>

식기, 옷 등 개인용품 및
그 밖의 물건

다. 합숙소 내 선수가 공공으
로 사용하는 장소

5.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
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
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

가. 합숙소의 침실, 화장실 및
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
금장치를 설치할 것

나. 선수의 개인용품을 정돈
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
납공간을 갖출 것

제3조의4(직장운동경기부 운영

등)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
“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
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”이란
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
수립 및 사전 공지에 관한 사
항

2.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체의
장과 선수·지도자간 협의할
수 있는 기구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사항

3.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

<신 설>

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선수단 구성 현황 및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요건 적합 여부

2. 합숙소 운영·관리 실적

3. 선수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등 조치실적

4. 직장운동경기부 훈련계획 수립 및 사전 공지 이행 실적

5.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체의장과 선수·지도자간 협의 실적

제22조의2(체육지도자의 재교육)

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(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

야 한다.

1.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

2. 경기단체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, 스포츠윤리의식 향상 교육,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인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·단체(이하 이조에서는 ‘재교육기관’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

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
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
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
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
말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.
이 경우 다음 연도에 재교육을
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1
1 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연
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
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
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
야 한다.

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
수행, 질병, 해외체류 또는 휴
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
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
사하지 아니한 경우

2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문
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
경우

⑥ 재교육기관의 장은 재교육을
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
12 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
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⑦ 재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

상자가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지도자로서 소속하였던 단체 (통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를 말한다)의 장이 발행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지도자로 훈련이나 국제경기대회(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를 말한다)에 참가하였다는 확인서(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

2. ~ 7. (생략)

② 경기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서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30조의2(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)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18

--대한체육회-----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대한체육회장 -----

-----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30조의2(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) -----

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 센터(이하 “스포츠윤리센터”라 한다)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제30조의4(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통합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·지회의 임직원

7.·8. (생략)

③ (생략)

제30조의5(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체육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「지방자치법」 제93조에 따른 시장·군수·구청장

제30조의4(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

7.·8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0조의5(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

시스템(이하 “징계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이 본인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<신설>

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(이하 이 조에서 “체육회등”이라 한다)-----

④ ----- 체육회등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제30조의8(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7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, 보유·이용 목적 및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필요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통합신고관리시
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
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
정한다.